

# 審 查 報 告 書

2001. 2. 14  
산업건설위원회

##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1. 1. 29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1. 1. 29
- 라. 上程日字 : 2001. 2. 14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都市課長 李仁秀)

### 가. 提案理由

- 국토이용관련법령(2000.2.9)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건축법시행령에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대상 시설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정함 (안 제3조).

○ 준농림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정함(안 제4조).

1. 시설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 ㉢ 유효저수량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지역
-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4호 같은법시행령 14조제1항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3의 등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대상시설 및 설치가능 지역을 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은 법령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행위제한 완화로 주민의 편익증대와 토지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 2000.12.16 서산시공고 제434호로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해당부서의 협의와 의견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시행시 분쟁등의 사전예방에 적극적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조 내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를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수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을 삽입하며, 제5조 내용중 “제2호”는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법령범위에서 이탈 되었음으로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小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 수정안 별첨

#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조의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로 하고 제3조 제2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로 한다

##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조례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제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제3조(허용대상시설)</p> <p>1.(생략)</p> <p>2.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p> <p>제4조(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 제3조(허용대상시설)</p> <p>1.(현행과 같음)</p> <p>2.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p> <p>제4조(현행과 같음)</p>

#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94 호
----------	---------

제출년월일 : 2001. 1. 29.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준농림지역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정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설치가능 지역을 정함.

- 아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지역
  -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 3. 법적근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

### 4. 입법예고

2000. 12. 16 ~ 2001. 1. 4

### 5.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원보호구역“500m 이내인 집수구역”등 제한지역의 명확한 관리대책 필요
- 농업기반공사 서산지부
  -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농업용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민원이 예상되므로 COD 8ppm이하로 하고 농업기반시설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6. 조치할사항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 폐지

#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3.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4.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제3조(허용대상시설)** 준농림지역내에서 허용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4조(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설치가능지역 등)** 준농림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5조(거리의 환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지역·구역·기타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제4조의 제2호에 의한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의 경우라 함은 당해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100미터 이내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준농림지역내에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적법하게 설치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된 것으로 본다.